

경기도 고시 제2017-5010호

김포 양촌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(변경) 고시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규정에 따라 김포 양촌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2017. 1. 13.

경 기 도 지 사

1. 산업단지 개요(변경)

가. 관리기관(변경)

- 지정 : 김포시
- 변경 : 김포골드밸리산업단지관리공단

나. 조성목적(변경없음)

- 양촌지역의 밀집공장을 정비하여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지역 내 중소기업의 육성하여 김포시 지역발전 도모

다. 추진경위(변경)

- '01.12.10 : 2016년 김포도시기본계획승인
- '02.07.23 : 공업지역 공급물량배정
- '04.09.30 :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
- '06.06.14 : 실시계획승인
- '10.03.29 : 실시계획 및 (변경)승인 고시, 사업준공 인가 공고
- '12.03.29 :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
- '12.08.06 : 개발계획(8차) 및 실시계획(6차) 변경 승인 고시
- '13.09.16 :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(경기도고시 제2013-263호)
- '13.10.29 : 준공인가 공고(경기도공고 제2013-1271호)
- '14.03.31 :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(경기도고시 제2014-77호)
- '15.02.03 :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(경기도고시 제2015-5014호)
- '15.10.05 :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(경기도고시 제2015-5170호)
- '16.06.07 :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(경기도고시 제2016-5131호)
- '16.10.31 :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사업시행자지정승인(경기도고시 제2016-5232호)
- '16.12.28 :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(경기도고시 제2016-5269호)

라. 분양현황(변경없음)

구 분	분양대상 (㎡)	분양 현황(㎡)			조성기간	조성기관
		계	분양	미분양		
계	1,110,809.4	1,110,809.4	1,069,193.2	41,616.2		
산업시설구역	926,050.3	926,050.3	926,050.3	-	'03~'10	김포시 경기도시공사
지원시설구역	159,387.4	159,387.4	126,246.3	33,141.1		
공공 시설 용지	계	25,371.7	25,371.7	16,896.6	-	-
	주차장	10,438.3	10,438.3	1,963.2		
	변전소	4,227.3	4,227.3	-		
	학교	10,706.1	10,706.1	-		

※ 상기 사항은 분양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마. 입주현황(변경)

(기정)

구 분	입주업체수			면 적(㎡)		
	계	제조업	지식산업센터	계	제조업	지식산업센터
계	886	189	697	926,050.3	826,113.7	99,936.6
2016. 1월 현재	776	183	593	926,050.3	826,113.7	99,936.6
향 후 계 획	110	6	104	-	-	-

※ 1)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경 기 도 보

제5642호

2017. 1. 13.(금)

(변경)

구 분	임주업체수			면 적(㎡)		
	계	제조업	지식산업센터	계	제조업	지식산업센터
계	902	205	697	926,050.3	826,113.7	99,936.6
2016. 10월 현재	792	199	593	926,050.3	826,113.7	99,936.6
향 후 계 획	110	6	104	-	-	-

바. 입지여건(기반시설)(변경없음)

시 설 명	총 계 획	개발기간	시행기관
도 로(m)	- 대로 : L = 3,859m, B = 25m - 중로 : L = 10,907m, B = 12 ~ 20m - 소로 : L = 2,738m, B = 4 ~ 11m	'03~'10	김포시 경기도시공사
용 수(㎡/일)	- 생활용수(Q) = 2,802.5㎡/일 - 공업용수(Q) = 7,142.0㎡/일	"	"
폐기물처리	매립, 소각 및 위탁처리	"	김포시 경기도시공사
오·폐수처리(㎡/일)	6,800(1차:3,400, 2차:3,400)	"	"
전 력(kW/일)	411,565	"	한국전력공사
통 신(회선)	4,990	"	(주) KT

※ 경기도 고시 제2016-5131(2016.06.07.)호 반영

2.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(변경)

가. 관리 기본방향(변경없음)

1) 기본방향

-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(이하 “산집법”이라 한다) 제38조, 제39조에 따라 공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를 입주시켜 생산활동을 지원
- 산업용지는 산업시설구역, 지원시설구역, 공공시설구역,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 하되, 부득이한 경우 산업시설구역 중 일부는 산업시설 또는 물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함

2) 추진방향

- 공장시설 용도를 업종별로 세분하여 배치 및 관리
- 업종별 배치에 맞는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
- 환경오염 및 공해업소 이전 유도

나.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(변경)

1) 용도별구역 면적

(기정)

구 분	계	산업시설구역	지원시설구역	공공시설구역	녹지구역
총면적(㎡)	1,681,015.8	926,050.3	159,387.4	354,041.6	241,536.5
비율(%)	100.0	55.1	9.5	21.0	14.4

(변경)

구 분	계	산업시설구역	지원시설구역	공공시설구역	녹지구역
총면적(㎡)	1,681,017.8	926,050.3	159,387.4	354,049.5	241,530.6
비율(%)	100.0	55.1	9.4	21.1	14.4

□ 산업시설구역 세부(변경없음)

(단위:㎡)

공장시설	물류시설	지식산업시설	폐기물처리시설	기타
826,113.7	-	99,936.6	-	-

2)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

가) 산업시설구역(변경없음)

① 「산집법」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에 한하며, 단, 업종 배치생략 구역의 입주 가능 업종은 양촌일반산업단지 입주업종 중 필지별 최초 공장 등록 업종(산업분류번호 중분류)에 한하며 이후 유사업종으로의 변경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

② 「산집법 시행령」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)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자(토지가 아닌 건물 옥상에 배치)

나) 지식산업센터구역(변경없음)

①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가능 업종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시 승인받은 업종에 한하며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른다

②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산집법 시행령 제3조의4 제2항 각호의 시설로 하며,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.(다만, 1호와 3호가 동시 적용이 가능할 경우 1호를 적용한다)

③ 불허용도 :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 2항 3호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, 장의사, 충포관매사, 동물병원, 단란주점, 의약품도매점, 안마시설소·안마원 용도는 불허

다) 지원시설구역(변경없음)

①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 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

② 지원시설구역 안에서 건축 행위는 별표#1에서만 가능함

라) 공공시설구역 :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(변경없음)

마) 녹지지역 :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(변경없음)

3) 용도별구획 평면도 : 별표#2

다. 업종별 배치계획(변경)

1) 업종별 배치현황(변경)

(기정)

구분	업 종		배치계획		2015.12월 현재		향후계획	
			업체수	면적(㎡)	업체수	면적(㎡)	업체수	면적(㎡)
산업 시설 용도	합 계		886	926,050.3	776	926,050.3	110	
	업종배치생략		21	54,660.6	21	54,660.6		
	펠프·종이및 종이제품	펠프·종이 및 종이제품	8	41,289.8	8	41,289.8		
		펠프·종이 및 종이제품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, 가구 제조업	5	16,490.6	1	16,490.6	4	
	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22	73,966.3	22	73,966.3		
		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,전기,가스,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	4	50,988.7	2	50,988.7	2	
		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, 기타 기계 및 장비	9	46,191.7	9	46,191.7		
	고무및플리 스틱제품	고무 및 플라스틱제품	2	5,506.4	2	5,506.4		
		고무 및 플라스틱제품, 기타 기계 및 장비	1	16,877.4	1	16,877.4		
	제1차 금속산업		19	79,645.6	19	79,645.6		
	금속가공제품		22	90,398.5	22	90,398.5		
	기타기계 및 장비		46	209,223.0	46	209,223.0		
	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		4	30,227.2	4	30,227.2		
	전자부품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		13	52,106.5	13	52,106.5		
	의료·정밀·광학기기 및 시계		8	29,005.3	8	29,005.3		
	가구 및 기타제품	가구 및 기타제품	4	16,523.0	4	16,523.0		
		가구 및 기타제품, 기타 기계 및 장비	1	13,013.1	1	13,013.1		

경 기 도 보

제5642호

2017. 1. 13.(금)

구분	업 종		배치계획		2015.12월 현재		향후계획	
			업체수	면적(㎡)	업체수	면적(㎡)	업체수	면적(㎡)
지식 산업 센터	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, 출판·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,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, 제1차금속산업, 금속가공제품, 기타 기계 및 장비,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, 전자부품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, 의료·정밀·공학기기 및 시계, 가구 및 기타제품		697	99,936.6	532	66,889.8	67	-
	기타기계및장비(29),금속가공품제조업(25),(기계및가구,도금업 제외)				61	33,046.8	37	-

(변경)

구분	업 종		배치계획		2016.10월 현재		향후계획	
			업체수	면적(㎡)	업체수	면적(㎡)	업체수	면적(㎡)
합 계			902	926,050.3	802	926,050.3	110	
산업 시설 용도	업종배치생략		22	54,660.6	22	54,660.6		
	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	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	9	41,289.8	9	41,289.8		
		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, 가구 제조업	5	16,490.6	1	16,490.6	4	
	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21	67,115.7	21	67,115.7		
		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, 금속가공제품, 가구제조업	3	6,850.6	3	6,850.6		
		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,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4	50,988.7	2	50,988.7	2	
		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, 기타 기계 및 장비	13	46,191.7	13	46,191.7		
	고무 및 플라스틱제품	고무 및 플라스틱제품	2	5,506.4	2	5,506.4		
		고무 및 플라스틱제품, 기타 기계 및 장비	2	16,877.4	2	16,877.4		
	제1차 금속산업		19	79,645.6	19	79,645.6		
	금속가공제품	금속가공제품	21	87,023.8	21	87,023.8		
		금속가공제품, 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, 전자부품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	1	3,374.7	1	3,374.7		
	기타기계 및 장비		49	209,223.0	49	209,223.0		
	전자부품· 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	전자부품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	13	43,845.5	13	43,845.5		
		전자부품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, 금속가공제품,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	2	8,261.0	2	8,261.0		
	의료·정밀·공학기기 및 시계		8	29,005.3	8	29,005.3		
	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	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	4	26,620.2	4	26,620.2		
		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, 전자부품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	1	3,607.0	1	3,607.0		
	가구 및 기타제품	가구 및 기타제품	4	16,523.0	4	16,523.0		
		가구 및 기타제품, 기타 기계 및 장비	1	3,357.6	1	3,357.6		
		가구 및 기타제품, 기타 기계 및 장비, 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	1	9,655.5	1	9,655.5		
지식 산업 센터	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,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,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, 제1차금속산업, 금속가공제품, 기타 기계 및 장비,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, 전자부품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, 의료·정밀·공학기기 및 시계, 가구 및 기타제품		697	99,936.6	532	66,889.8	67	-
	기타 기계 및 장비(29)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25) (기계 및 가구, 도금업 제외)				61	33,046.8	37	-

2) 업종별 배치기준(변경없음)

- 주변 환경의 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종별 블록화 및 블록별 관련업종 인접배치
- 업종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열화가 가능하도록 배치
- 단지 중심의 4차로 주변에 단지의 쾌적성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가급적 광필지(16,529㎡이상)로 공급계획
- 위의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형상 등 현실적인 여건 또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치기준과 달리 배치할 수 있음
-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은 토지가 아닌 건물 옥상에 배치되는 업종임

3) 업종별 배치계획 : 별표#3(변경)

라. 입주관리계획(변경없음)

1) 입주대상업종

-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(17)
-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18)
-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22)
- 제1차 금속산업 제조업(24)
- 금속가공제품 제조업;기계 및 가구 제외(25)
-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26)
- 의료·정밀·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(27)
- 전기장비 제조업(28)
-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29)
-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(32,33)
-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(35)

【입주제한 업종】(별표# 4) 【변경없음】

- 공업용수 다소비 및 입주 부적격 업종
-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
-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1의 1종사업장 내지 2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(다만, 생산공정 중 화석연료(액체 및 고체)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)
-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(다만,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 제외)
-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의 1종사업장 내지 2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

2) 입주자격(변경없음)

가) 산업시설구역

- 산집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춘 자

나) 지원시설구역

-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입주 자격을 갖춘 자
-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

3) 입주 우선순위(변경없음)

- 1순위 : 김포시 지역에서 이전하는 업체
- 2순위 :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고자하는 업체
- 3순위 : 기타 양촌일반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
- ※ 동일한 순위에서 경합되는 경우에는 입주심의 평가표에 의하며, 평가결과가 동점일 경우에는 추천으로 입주대상자를 결정한다

4) 입주절차(변경없음)

-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

5) 분양(분할)한도(변경없음)

- 최소분양면적 : 1,650㎡ 이상 (단,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1항제1호내지3호에 해당하는 경우 900㎡이상)

마. 사후관리계획(변경없음)

1) 산업용지 관리

- 산집법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,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 관리

2) 환경관리

- 입주업체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, 대기 오염, 소음·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함
-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·폐수,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산업단지내 적정처리 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
- 산업단지내 공원과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인근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지역 환경오염을 최소화
- 폐수처리장 시설개요
 - 규모 : 17,377.3㎡
 - 처리용량 : 6,800㎡/일(1차:3,400 준공, 2차:3,400)
 - 처리방법 : A2O+응집침전+여과처리방법
 - 수질기준 (단위:mg/ℓ)

구분	BOD	COD	SS	T-N	T-P
유입수질	217.5	131.9	217.8	60.31	6.45
방류수질	9	30	10	20	2

- 재활용을 제외한 폐기물은 소각후 매립

※ 폐기물 처리 방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

- 특정폐기물은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에게 전량 위탁하여 처리

3) 안전관리

-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파출소, 소방파출소 등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유치하고, 관련기관과 재해복구협조체제 구축
- 산집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거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하고 재해발생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복구 실시

바.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(변경없음)

1) 공장설립 지원

- 공장설립 업무 인·허가 절차 대행 및 현지출장으로 신속한 업무처리
-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완료신고시 완료신고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

2) 생산활동 지원

-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
- 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
- 기술개발 및 수출, 무역, 박람회 등 산업정보 제공
- 구인·구직의 날 운영 등 산업인력 수급 지원
- 각종 지원시책 추진 시 우대

3) 고용증대 및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

- 산업인력공단, 산업안전공단 등을 통한 근로자의 기술능력향상 교육 실시
- 단지내 근로자복지회관, 어린이집 등을 통한 근로자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유휴 여성 인력의 취업기회 부여

- 4) 경영 및 기술개발 지원
- 생산성 향상 및 품질관리활동 지원
 - 생산시설의 자동화를 위한 기술 및 정보 제공
 - 입주기업체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
- 5) 지원시설 설치계획
- 관리청사, 금융시설, 후생복지, 차량관련시설, 공공업무시설 등
- 사. 기타 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- 1) 중소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
 - 2)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
 - 3) 분양용지의 불법전매·장기 유휴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

[별표# 1]

1. 생산시설용지(변경없음)

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생산시설 용지	용 도	◦ 지정용도 - 공장 ◦ 권장용도 - 산업집적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-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은 토지가 아닌 건물 옥상에 배치되는 업종임 ◦ 불허용도 - 공장외의 시설 불허
	주 차	◦ 150㎡ 당 1대
	건폐율	◦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(80%이하)
	용적률	◦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(350%이하)
	건축선	◦ 15M이상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M ◦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

2. 지식산업센터(변경없음)

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지식산업 센터	용 도	1. 입주가능 업종은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른다. 2.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각 호의 시설로 하며,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.(다만, 1호와 3호가 동시 적용이 가능할 경우 1호를 적용한다.) 3. 불허용도 : 종교집회장, 장의사, 총포판매사, 동물병원, 단란주점, 의약품도매점, 안마시술소안마원용도는 불허
	주 차	◦ 150㎡ 당 1대
	건폐율	◦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(80%이하)
	용적률	◦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(350%이하)
	건축선	◦ 15M이상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M ◦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

3. 단독주택용지(변경없음)

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단독주택 용지	용 도	◦ 허용용도 : 제1종 일반주거 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 - 단독주택 (다중주택 제외) -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만 허용하며, 건축물의 연면적 중 40% 이하 ◦ 불허용도 - 「학교보건법」에서 규정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-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종교집회장, 장의사, 제조업소, 창고시설 - 지하층은 주거용도 불허
	세대수	◦ 4세대 이하
	건폐율	◦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(60%이하)

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	용적률	◦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(150%이하)
	높이	최고층수
		4층이하
	주차	◦ 김포시주차장조례 한하며, 기계식 주차장 불허
	건축선	◦ 도로경계선에서 1.5M 후퇴

4. 지원시설용지(변경없음)

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지원시설 용지	용 도	◦ 허용용도 :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 용도 - 제1종근린생활시설, 제2종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 - 교육연구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 - 의료시설(정신병원, 요양소, 장례식장 제외) - 보육시설용도 및 그 부대·복리시설 - 외국인 자원센터용도 및 그 부대·복리시설 - 소방서 시설용도 및 그 부대·복리시설 - 기타공공시설용도 및 그 부대·복리시설 ※ 각 필지에 해당되는 용도 -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6호 가항의 종교집회장 ◦ 불허용도 -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-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·안마원, 종교집회장
	건폐율	◦ 70%이하
	용적률	◦ 350%이하
	주 차	◦ 김포시주차장조례 한하며, 기계식 주차장 불허 ※ 단, 암반 등의 지질로 인하여 토지굴착 등에 난공사가 예상되는 경우(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후검토)에 한하여 해당 승인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할 수 있다.
	건축선	◦ 주출입구 정면 도로경계선에서 2M 후퇴 ◦ 25M0이상의 도로에서 진출입 불허

5. 주차장 시설용지(변경없음)

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주차장 시설용지	용 도	◦ 지정용도 - 주차전용 건축물일 경우 주차장법에 따름 - 노외주차장일 경우 부대시설로서 휴게소, 간이매점, 자동차장식품 판매점, 주차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 ◦ 불허용도 -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-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·안마원, 종교 집회장, 장의사
	건폐율	◦ 주차장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폐율(90%이하)
	용적률	◦ 층수제한(7층 이하로 주차장법 규정에 따름) 및 용적률(450%이하)
	형태및외관	◦ 주차타워일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
	건축선	◦ 주출입구 정면 도로경계선에서 2M 후퇴 ◦ 25M0이상의 도로에서 진출입 불허

6. 위험물 처리시설용지(변경없음)

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
위험물 처리 시설용지	용지명	주유소	충전소
	용 도	-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- 부대시설 (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호에 한함)	-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- 부대시설(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 규칙 별표3호에 한함)
	건폐율	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(80%이하)	
	용적률	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(350%이하)	
	고도제한	30M	
	건축선	- 주출입구 정면 도로경계선에서 2M 후퇴 -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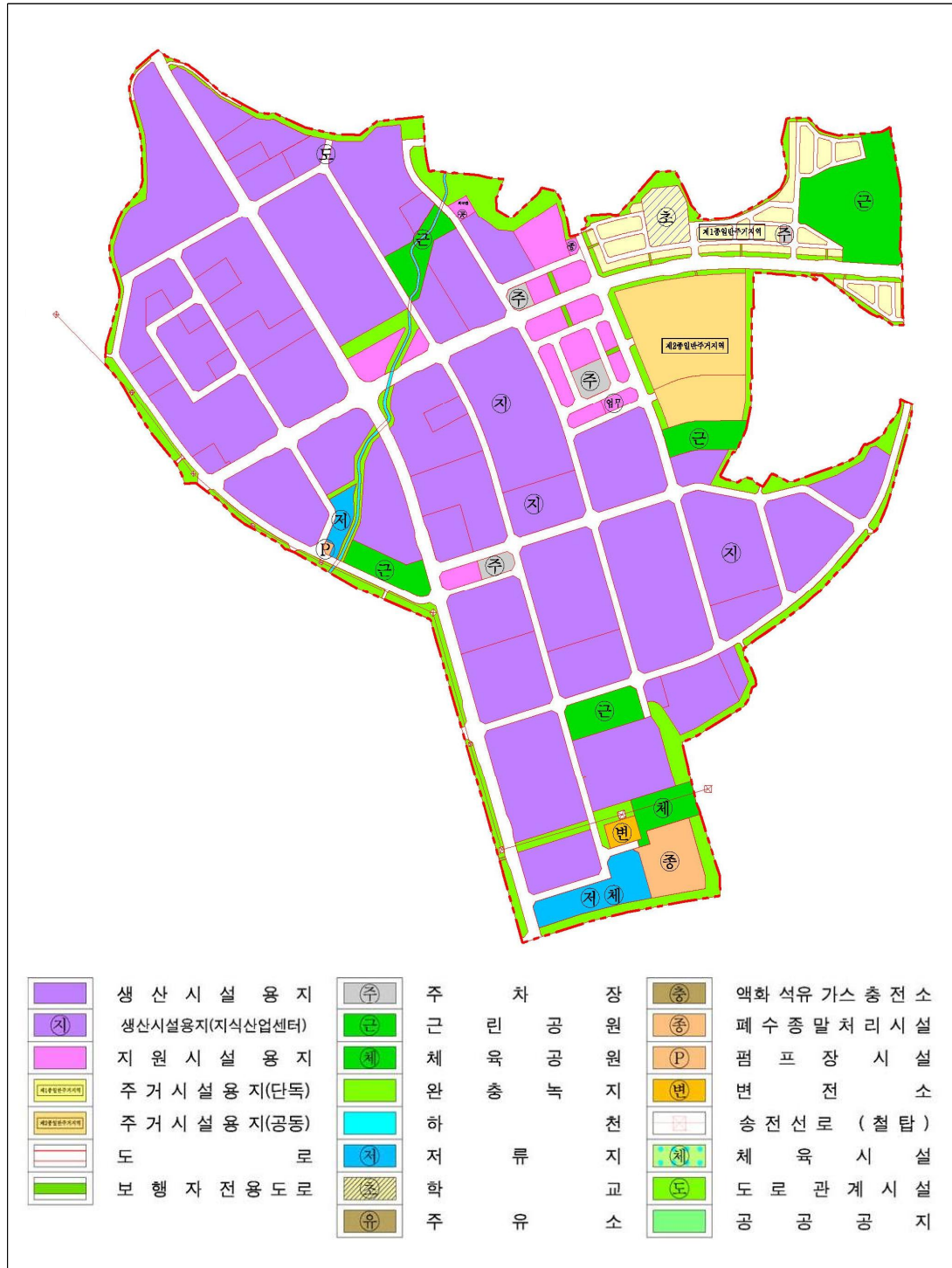
7.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조례에 따름

[별표# 2 : 토지이용계획도](변경)

[개발계획평면도(기정)]



[개발계획평면도(변경)]



[별표# 3 : 업종배치계획도](변경있음)

[업종배치계획도(기정)]



[업종배치계획도(변경)]



[별표# 4 : 입주제한업종](변경없음)

분류번호	업 종 명
17110	펄프 제조업
17121	신문용지 제조업
17122	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
17123	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
17129	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
25922	도금업

경기도 고시 제2017-5011호

평택 드림테크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

경기도 고시 제2016-5091호(2016. 04. 21)로 고시된 평택 드림테크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시행자변경을 위하여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같은 법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4 및 같은법 제19조의2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17. 1. 13.

경 기 도 지 사

- 산업단지의 명칭·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
 - 명 칭 : 평택 드림테크일반산업단지
 - 위 치 :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울북리, 어연리, 한산리 일원
 - 면 적 : 1,345,021㎡
- 산업단지의 지정목적(변경없음)
 - 인근 고덕신도시, 삼성전자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관련업종간 연계발전 및 산업단지 수요충대
 - 사업지구 남측, 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를 연계하는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수도권 기업 이전 및 신규 산업의 수요에 부응
 - 저공해 첨단산업과 연구시설을 적절화하여 시너지효과 창출
 - 국내 선도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
-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(변경있음)
 - 시행자
 - 기정 : 평택 드림 테크(주) 대표이사 노 승 율
 - 변경 : 드림 테크 개발(주) 대표이사 노 승 율
 - 주 소 :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청원로 45
- 산업단지의 개발기간(사업시행기간) 및 방법(변경없음)
 - 개발기간 : 지정일 ~ 2018년 8월 31일
 - 개발방법 : 민간개발
-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(변경없음)
-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(변경없음)
- 공급처리계획(변경없음)
-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(변경없음)
- 수용·사용할 토지·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·주소(변경없음)